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44호 2021. 9. 16.(목)

	_
_	
- 1	
	ΛI

- 사천시 고시 제268호 가천 농촌다움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27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3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224호 도로사용(임시개통) 개시에 관한 공고 ------ 4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216호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사천시 공고 제1218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법예고 ------ 15

회					
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제 744호

사천시 고시 제2021-268호

가천 농촌다움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가천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3항 및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가천 농촌다움 복원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및「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

3. 사업비 : 55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 계		550.0	
가꾸내(가천			550.0	
	가천천 정비	 ○ 하천정비 L=134m, B=10~12m (전석쌓기, 전석놓기, 징검다리, 계단, 홍수방호벽, 보강토블럭쌓기, 벽화) ○ 도로정비 L=134m, B=5m ○ 용지보상비 등 	550.0	

제744호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일 련	소지	내지		지	편입면	적(m²)	소유기	자	소	유권 ㅇ 권리명		
번 호	면	리	지번	목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비 고
			합 계			2,462						
1) 7	·구내(기	천천) 7	성비			2,462						
1	사남	가천	296	천	231	1	한국농어촌공사					
2	11	11		전	180	56	한국농어촌공사					
3	"	II		천	23,785	2,246	국(국토교통부)					
4	"	II		답	564	111	김 * *	전시호로 **				
5	"	"		도	232	1	김 * *	전시소로 **				
6	"	"		답	9	9	김 * *	전시소로 **				
7	"	"		답	22	9	김 * *	전취소호로 **				
8	"	"		대	545	7	김 * *	서울 관악구 난곡로 **길 **				
9	11	"		도	2,559	22	국(국토교통부)					

8. 관계 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제744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27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9. 16.

사 천 시 장

-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제2021-7호
-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O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O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O 어선접안용 부잔교 설치
-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O 사천시 노룡동 975-3번지선 일원
-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O 신고번호 : 제2021-8호
 - O 공사기간: 2021. 9. 13.~2021. 12. 31.
-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1. 9. 13.
-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O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O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제 744호

사천시 공고 제2021-12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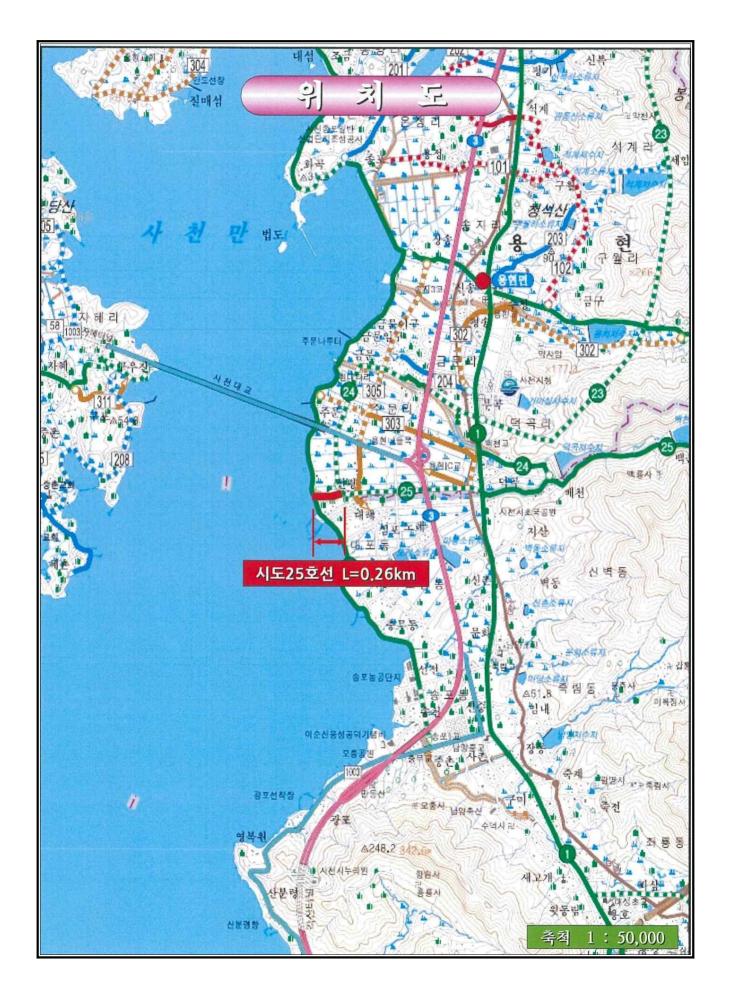
도로사용(임시개통)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임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사천시장 (인)

- 1. 도로의 종류 : 시도(신평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25호선(덕곡~용치)
-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L=0.26km(신설 2차로)
 - 사천시 대포동 ~ 사천시 대포동
 - 임시사용 기간 : 2021.9.17.~2021.10.17.(31일간)
- 4. 개시일시 : 2021. 9.17. 00:00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1.09.24.까지
 - 2) 열람장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도로과(☎831-3377)
- 6. 비 고 : 2021년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 및
 -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임시개통 함.
-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제744호

사천시 공고 제2021-1216호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조례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법률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

제 744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6,

FAX: 831-6021)

^ 1 전 시 공 보

제744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	명):
O 주	소:
O 생 년 월	일:
O 전 화 번	ই: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제 74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향군인회"라 함은"을 "대향군인회"라"으로, "'사천시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사천시 재향군인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향군인"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으로,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항군인회의 운영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제744호

-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	제1조(목적)
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	
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u>정함</u> 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	<u> 규정함</u>
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u></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뜻은
1. "재향군인" <u>이라 함은"대한민</u>	1 <u>이란 「대한민국재</u>
<u>국재향군인회법"</u> (이하 "법"이	<u>향군인회법」</u>
라 한다) 제5조에 <u>따라</u> 회원	<u>따른</u>
의 자격을 갖춘 <u>자를</u> 말한다.	<u>사람을</u>
2. <u>"재향군인회"라 함은</u> 법 제6	2. <u>"재향군인회"란</u>
조에 따라 조직된 <u>"사천시 재</u>	<u>"사천시</u>
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u>재향군인회"</u>
<u>라 한다)</u> 를 말한다.	
제4조(예우) <u>재향군인</u> 에게 다음	제4조(예우) <u>사천시장(이하 "시</u>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u>수있</u>	<u>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u>
<u>다</u> .	<u>수 있</u>
	<u>다</u>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
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	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재

을 지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사업
-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 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 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항공헌한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사업
 -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사업
-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

 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사천시 지방보 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 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 (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전문개정 2008. 12. 31.]

-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 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연합분회(聯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 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회를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군·구회를 두고,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12. 31.]

-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③ 삭제 <2016. 5. 29.>

제744호

사천시 공고 제2021-1218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벌용동 공동주택 신축 및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통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 증진 및 행 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용동 통·반장 정수 조정

O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2개 통, 6개 반 증

제 744호

- 용강서희스타힐스 신축(418세대) $\begin{bmatrix} 43$ 통 신설, $1\sim3$ 반 신설 44통 신설, $1\sim3$ 반 신설 나. 선구동 반장 정수 조정
 - O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1개 반 감
 - 선구동 제8통 1개 반(5반) 감, 동서금동 제7통(3반)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831-6021)

제744호

	입병	법 예	고	사항에	대한	의	견사
--	----	-----	---	-----	----	---	----

- □ 자치법규명: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생 년 월 일:
 - O 전 화 번 호:

의견	비고
	의견

제744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44호

[별표 2]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제4조 관련)

행정동명	정 수	통 수
합 계	162	162
동서동	35	35
선구동	23	23
동서금동	20	20
벌용동	44	44
향촌동	20	20
남양동	20	20

^ 1 천 시 공 보

제744호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합계	1,565
사천읍	212
정동면	151
사남면	12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09
동서금동	110
벌용동	217
향촌동	81
남양동	85

관 련 법 규

□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두다.
 - ② 행정리와 통에는 이장과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 ③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운영의 편의와 취락 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④ 리·통은 3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이·통장의 임명 등) 이·통장의 임명 및 정수, 행정리·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